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녹색융합클러스터에 대한 국유·공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 마련 등 〉

■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18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녹색융합클러스터에 대한 국유·공유재산 사용 등의 특례 근거 마련	2
2.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근거 마련	11
※ 참고자료	17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17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6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22일 김형동위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자체 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재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 상 클러스터 조성 부지에 대한 임대 및 영구축조물 설치 근거가 없어 부지매입을 위한 부가적 행정 절차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을 통해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을 가능케 하고자 함.

이에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과 연관 산업간의 융복합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국가·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시책 규정을 보완함(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녹색융합클러스터에 대한 국유·공유재산 사용 등의 특례 근거 마련

개정안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국유·공유재산 사용 등에 대하여 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연장하며, ③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녹색융합클러스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현행	개정안
	<u>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란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하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란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운영 및 지정 현황]

구분	창업 벤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Post- 플라스틱	청정대기	폐반도체	태양광 폐패널	바이오 에너지
지역	인천 서구	경북 포항 블루밸리 영일만 산단	부산 생곡 자원순환단지	광주 빛그린산단	구미 국가 4단지內	해남군 산이면	보령시 주포면
추진 일정	운영 (17~)	착공('23.10월), 준공('25.6월)	설계('22~) * 타당성재조사 중 ('24.2~)	설계('20~) * 타당성재조사 중 ('22.12~)	조성계획('24), 설계('25), 착공('26~), 준공('28) (예정)		

※ 출처: 환경부

한편, 국유·공유재산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
동산, 증권, 지식재산 등의 재산을 의미하고²⁾,

2)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
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
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국유·공유재산의 종류에 따른 사용기간·대부기간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됨³⁾.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제품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3)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고도화 등을 위한 거점단지 조성을 위하여 6개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의 부지매입 협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클러스터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에 대한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환경부가 추정한 각 클러스터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

4) 「국가재정법」 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지 않았으며, 토지가격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총사업비 및 연도별 예산 편성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사업 기간	총 사업비	구분	연도별 예산 편성 계획				
				'24	'25	'26	'27	'28
합계	-	141,692		(1,100)	9,000	47,157	48,877	36,658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구미)	'24~'28	45,773	소계	(400)	3,000	14,932	15,909	11,932
			국비	(400)	1,500	5,966	9,454.5	5,966
			지방비	-	1,500	8,966	6,454.5	5,966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클러스터(해남)	'24~'28	48,831	소계	(400)	3,000	17,599	16,132	12,100
			국비	(400)	1,500	6,049.5	10,816	6,050
			지방비	-	1,500	11,549.5	5,316	6,050
바이오에너지 클러스터(보령)	'24~'28	47,088	소계	(300)	3,000	14,626	16,836	12,626
			국비	(300)	1,500	6,313	9,418	6,313
			지방비	-	1,500	8,313	7,418	6,313

* '24년 조성계획 용역비(총 11억원)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 출처: 환경부

개정안에 따라 국유·공유재산 사용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경우 국가 재정법상의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규모의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⁵⁾).

참고로,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2개소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부산 생곡 자원순환단지, 광주 빛그린산단)은 사업비 증가로 인하

5) 또한, 행정안전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과 다른 공유재산 사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여 타당성재조사를 진행 중임.

또한, 개정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첫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⁶⁾는 같은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특례를 정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국유·공유재산 사용 등의 특례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⁷⁾도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는 총 218개 법률의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녹색융합클러스터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발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둘째, “녹색융합클러스터”란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허가, 대부계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의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국유·공유재산 사용 등에 대한 특례의 주체를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7) 참고자료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유사입법례로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유·공유 재산 사용 등의 특례의 대상을 핵심산업관련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음⁸⁾.

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근거 마련

개정안은 ①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⁹⁾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주기업으로부터 공장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장 등록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6조의2(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① 입주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9)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도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으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도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며, 공장을 설립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¹⁰⁾.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도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도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장 승인·등록 절차]

절 차	주 체	내 용	관 련 법
공장설립 승인신청	사업자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준비 · 해당 지자체 공장설립등록 담당부서 제출	「산업직접법」 제13조, 시행령 제19조 등
▼			
관계부서 협의 (승인 검토)	관할 지자체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적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국토 계획법, 연구개발특구법 등)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건축법 등)	「산업직접법」 제13조, 시행령 제19조 등
▼			
공장설립 승인	관할 지자체	· 공장설립 검토 및 승인 ·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산업직접법」 제13조, 시행령 제19조 등
▼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사업자	· 건축허가 신청 · 건축착공 신고	「산업직접법」 제14조, 제14조의2, 「건축법」 제11조 등
▼			
공장설립 완료 신고	사업자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산업직접법」 제15조 등
▼			
공장등록	관할 지자체	· 설립 완료 신고서의 승인사항과의 일 치여부 확인 후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산업직접법」 제16조 등

※ 출처: 환경부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폐수배출시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만, 건축물의 일부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소유 또는 임차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본다.

설을 설치하는 공장 등은 도시형공장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¹¹⁾.

환경부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의 신기술을 실증화·시제품 생산으로 연계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생산시설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건축 관계 법령은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 입주기업이 녹색융합클러스터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생산시설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환경부가 조성·운영하고 있는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장” 용도의 건축물 설치가 불가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¹²⁾.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공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에 개정안은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¹³⁾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 4. (생략)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5. (생략)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 21. (생략)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6호 관련)

- 중략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 이하 생략 -

13)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녹색기업의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 및 사업화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국토교통부는 현행 법령이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도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서만 별도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2024. 3. 26.>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1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사용료등의 감면	2024. 12. 31.
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3	「결핵예방법」 제2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5. 12. 3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8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9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0	「공연법」 제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2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29. 12. 31.
14	「광주과학기술원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1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7	「국가철도공단법」 제2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8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1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2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26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7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3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3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32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33	「국회사무처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3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양여	2029. 12. 31.
35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3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3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3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39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4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양여	2029. 12. 31.
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3	「노인복지법」 제5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양여	2029. 12. 31.
45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6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7	「농촌진흥법」 제3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9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50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5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52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	양여	2029. 12. 31.
55	「도시개발법」 제6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5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5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57	「도시철도법」 제11조	양여	2029. 12. 31.
5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29. 12. 31.
59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60	「독립기념관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61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6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양여	2029. 12. 31.
63	「모자보건법」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6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6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66	「문학진흥법」 제13조	양여	2029. 12. 31.
67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6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69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0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70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7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4	「발명진흥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6	「방위사업법」 제32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77	「방위사업법」 제4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8	「법률구조법」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 용허가등	2029. 12. 31.
8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 용허가등	2029. 12. 31.
8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2조	양여	2029. 12. 31.
8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83	「사립학교법」 제3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8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85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8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8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 용허가등	2029. 12. 31.
8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8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9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 용허가등	2025. 12. 31.
9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 용허가등	2025. 12. 31.
9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9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 용허가등	2029. 12. 31.
95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9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9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9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9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0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01	「선원법」 제11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02	「선원법」 제14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03	법률 제10710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양여	2029. 12. 31.
10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0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10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108	「수도법」 제77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09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1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1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8조	양여	2029. 12. 31.
1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2	양여	2029. 12. 31.
116	「아동복지법」 제62조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한정한다)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20	「암관리법」 제3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2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2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25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26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	양여	2029. 12. 31.
1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2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2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3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31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32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3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3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3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3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3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3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1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3	「전시산업발전법」 제26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44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7	「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29. 12. 31.
14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5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5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5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15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55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56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57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58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8조	양여	2029. 12. 31.
15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6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7. 12. 31.
16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62	「철도사업법」 제4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63	「철도사업법」 제46조의2	장기 사용허가등	2035. 12. 31.
16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6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6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67	「청소년 기본법」 제5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68	「청소년 기본법」 제5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69	「초지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70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7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7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29. 12. 31.
17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7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75	「하수도법」 제6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7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양여	2029. 12. 31.

177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78	「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79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80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81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8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8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84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8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	양여	2029. 12. 31.
18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87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8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8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 용허가등	2025. 12. 31.
19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2	「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	양여	2029. 12. 31.
193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4	「한국연구재단법」 제1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6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9	「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00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01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0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03	법률 제16160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부칙 제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0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 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0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20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08	「항로표지법」 제3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09	「항로표지법」 제4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1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1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211	「항만공사법」 제2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1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여	2029. 12. 31.
213	「해양환경관리법」 제10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장기 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의 감면	2025. 12. 31.
2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2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사용허가등 및 양여 (대체자산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양여에 한정한다)	2032. 12. 31.
218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도시형공장 해당 업종(제34조제2호 관련)

분류번호	업종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중 보정용 인조눈을 제조하는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